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77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이언주 · 김병주 · 이광희
안도걸 · 한준호 · 김우영
안태준 · 부승찬 · 홍기원
임미애 · 김한규 · 허성무
오세희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선진국의 국방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양안 관계 긴장 등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조달 기간 장기화 및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기술이전 제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약 98.9%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용 반도체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이로 인해 국제 정세 변화나 수출 통제 조치 발생 시 국방 전력 운용에 필수적인 핵심 반도체 부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민수 반도체 산업 중심의 시장 구조만으로는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첨단 센서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은 반도체 성능에 크게 좌우되며,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산 국방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설계·생산을 촉진하고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이 효과적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 현황, 국내외 공급망 및 기업 경쟁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생산능력,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방반도체 소재·공정·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변경, 국방반도체 개발·이전·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산업체 등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국방반도체사업에 참여하려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고(안 제15조),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성과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여 국방반도체의 전략기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함(안 제17조).
- 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 육성과 국내 생산된 국방반도체 사용확대 등을 위해 국방반도체 생산기업의 국내 방산시장 진입과 판로확보 등을 뒷받침하는 국방반도체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 차. 국방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 양성 시책 수립 및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설계·생산을 촉진하고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반도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에 적용 또는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2. “국방반도체산업”이란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란 국방반도체산업과 관련한 기업, 법인, 연구기관,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4. “설계자산”이란 국방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관련된 지식재

산권을 말한다.

5.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이란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방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국방반도체 기반조성

제5조(국방반도체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반도체 발전 관련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반도체 관련 국내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정비에 관한 사항

항

4.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수요기반 등 산업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반도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① 국방반도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반도체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
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방위사업
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국방반도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
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국방반도체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그 밖에 국방반도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 및 경쟁력에 관한 사항
2. 유형별 국방반도체의 주요 성능, 조달경로 및 국가별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 등과 관련된 국내외 공급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위산업 침해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설계자산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활

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설계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현황
 3.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의 소유권 및 기술이전 현황
 4.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현황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반도체 정보 및 관련 정책
 6. 그 밖에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제9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 관련 소재·공정·패키징의 연구개발
2. 국방반도체 설계
3.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

계변경

4. 국방반도체 개발·이전·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5. 그 밖에 국방반도체의 국내 기술기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준, 방법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행위

2. 사용용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하거나 전용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공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제3항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4장 국방반도체 생산관리

제11조(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 및 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연구개발·설계·생산된 국방반도체 또는 제14조의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 또는 생산한 반도체에 대하여 그 품질·성능·적합성·내구성 등을 시험(이하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국방반도체에 대한 인증(이하 “국방반도체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및 국방반도체인증을 위

하여 요건, 항목,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표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이 제2항의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방반도체를 생산, 설계 또는 활용하는 자와 군수품의 조달이나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또는 협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 및 국방반도체인증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4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방반도체 우선구매)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무기체계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설계자산 및 국방반도체
2. 국내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계 또는 생산한 반도체 중 제11조에 따른 국방반도체신뢰성시험을 통과한 반도체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또는 협약의 특례) ①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라 연구 개발, 설계 또는 생산된 국방반도체 관련 기술 또는 제품 등을 적용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국가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 부과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협약상 제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및 협약상 제재의 미적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제14조(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국방반도체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반도체 사업자(이하 “국방반도체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조직 또는 단체

② 국방반도체 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방반도체사업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방반도체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원활한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요건 등을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국방반도체사업자가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신청,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로 본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①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실태조사,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제품,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설계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반도체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자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 소유의 개발성과물 중 국방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

방반도체사업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조)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방반도체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방반도체산업 관련자 및 국방반도체 사업자(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과 기술제휴를 하거나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연구원 등 전문인력을 제21조에 따라 국방반도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기관에 관련 기술자료, 장

비 및 연구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국방반도체 수요자와 국방반도체와 관련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연구개발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반도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방반도체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방반도체 기술 및 산업의 국제표준화
3. 국방반도체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4. 국방반도체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민간부문의 국방반도체 관련 국제협력
6. 국방반도체 관련 학술회의 개최, 참가 및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국방반도체 상생협력 지원제도)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생산 국방반도체에 대한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국내 국방반도체 기업의 방산업체 등에 납품을 지원하는 국방반도체 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방산업체 등을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방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그 밖에 국방반도체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2.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사항,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국방반도체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의 운영 및 교육 과정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방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의 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국방반도체 정책·제도 수립 지원
2. 제7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개발관리
4. 제11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의 평가 및 국방반도체인증 연구
5. 제15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지정 지원

6. 제16조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7. 제17조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및 기술 이전의 지원
8. 국방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및 국방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9. 그 밖에 국방반도체사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 제22조(조사 및 검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공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1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구성과물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공개·유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방해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출입·조사 등을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